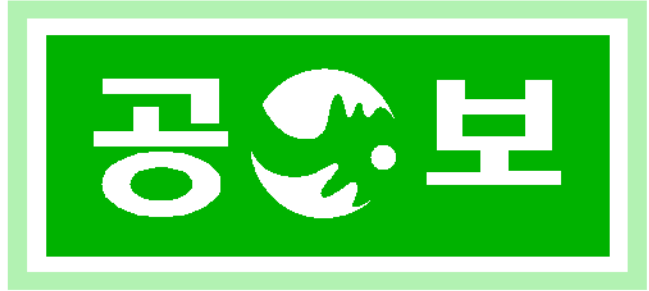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685 호 2011. 3. 28(월)

## 규 칙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35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고 시

○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29호[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 8

## 공 고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206호[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공개모집 공고] ..... 9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부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3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를 “조사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대상사별로”를 “조사대상사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변호사”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로 하고, “입회”를 “참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 제2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중 “폐업으로 인하여”를 “폐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를 “「지방세법」 제87조”로, “「지방세법」 제176조”를 “「지방세법」 제89조”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 치 증

범위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조세범처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하기위한 당 기관에 경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일회인등 소속	성명
서명날인기부사유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회인	소속	직급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울 신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별지 제5호시식】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 87조 참조

○ 미월별 작성하루: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부시행령, 동부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 중 세무조사운영관련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011. 1. 5 행정안전부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안」 시달

## 2. 개정내용

가. 지방세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제1조, 제2조, 제17조 등)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 7일 전에 ⇒ 10일 전에(제17조)

다. 세무조사기간 신설 : 규정없음 ⇒ 20일 이내(제18조)

라. 납세조력을 받을 권리 범위 구체화(제23조 제2항)

- 변호사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마.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조항 신설(제30조제4호)

- 납세권리인용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미. 서식 정비(별시 제1호, 제3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29호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양성지구	양성동 582-1	침수위험	가	12,53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2006. 3. 13
명촌지구	명촌동 433-24	취락 방제시설	가	18,846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2006. 3. 13

2011년 3월 28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206호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공개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공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예산(안)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단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리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8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기간 : 2011. 4. 1. ~ 5. 16.(46일간)
2. 모집대상 : 주소 또는 직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인 주민
  - ※ 제외자 : 각종세금 및 과태료 등 체납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 등
3. 신청서식 :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게재 및 북구청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비치
4. 모집인원 : 44명
5. 접수지 및 방법
  - 접수지 : 북구청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219-7219), 북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주민참여예산>자유로론방 [http://www.bukgu.ulsan.kr/adm/adm04\\_02\\_05.php](http://www.bukgu.ulsan.kr/adm/adm04_02_05.php))
  - ※ 우편 :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북구청 기획감사실
6. 활동내용
  - 우리구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제시 및 예산(안) 우선순위 심의
7. 선정기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위원 선정일 기준)
    -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
    - 품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공익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요소
    - 예산·행정 관련식 종사자, 시민·사회·기능단체 활동가
    - 여성비율 30% 이하인 경우 여성 신청자 우선
  - 동지역 거주자는 총 위원의 20% 이하, 단체별 추천인원 2인 이하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사 후 결정
  - 4개 분과(일반행정, 문화·체육·복지, 환경·산업경제, 지역개발) 중 신청 시  
신호 분과 우선 배정 후, 분과별로 직의 조깅(분과별 20명 이내)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감사실(예산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052) 219-7206, 7213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성 년	
성 련 위 일		학 력	
주 소			
직장(직업) 및 전화번호	직장명(직업):		직업:
	☎ 직장 :	지택 :	휴대폰 :
E-mail	※광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야위원회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산인경제 ④지역개발		
	(참여 희망하는 분야위원회를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나열시 ㄱ제)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